

1. 개정이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0565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 이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특성화특수학교 지정 절차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성화특수학교 지정 절차 규정(안 제1조의2)

- 1) 특성화특수학교로 지정 받고자 하는 법인 및 학교의 장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지정 신청서 제출
- 2) 국립의 특수학교는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공립 및 사립의 특수학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성화특수학교로 지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소관부서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 등)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성화특수학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의 특수학교의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의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직원 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특성화특수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이 국립의 특수학교를 특성화특수학교로 지정할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교육감이 공립 및 사립의 특수학교를 특성화특수학교로 지정할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그 밖에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조의2(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 등)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성화특수학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의 특수학교의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의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u> <u>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u> <u>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u> <u>4. 교직원 배치에 관한 계획</u> <u>5. 그 밖에 특성화특수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u> <u>② 교육부장관이 국립의 특수학교를 특성화특수학교로 지정할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u>③ 교육감이 공립 및 사립의 특</u>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 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또 는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나 진 단·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u>수학교를 특성화특수학교로 지 정할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u>④ 그 밖에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 립학교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다.</u>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 ----- 법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	--